

『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세 감면 조례」의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,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변경(안 제4조, 안 제11조, 안 제17조)
- 감면실효성이 없는 감면 폐지
 -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,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,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,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
- 한국노동교육원, 운수연수원,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폐지(안 제7조)
-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은 '09년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되어 있어 폐지
-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으로 '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'09년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여 과세전환(안 제15조)

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 5년으로 연장(안 제23조)
-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오락장,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(안 제27조)
-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·정비하는 한편,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

4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7조, 제9조, 시행규칙 제114조, 제115조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
- 문화재보호법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
-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
- 임대주택법 제2조, 제16조, 시행령 제13조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30조, 32조
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, 제28조의5
-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
-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
- 경상북도 세정과-7503(2009.10.01)호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“구미시세 감면 조례”의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,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내용은

-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변경하였고
-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,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,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,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은 폐지하였음
- “자동차관리법” 개정으로 ‘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‘09년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여 과세전환 하였으며
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,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오락장,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음
- 또한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·정비하는 한편,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“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”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별다른 저촉사항 없음